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123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OO
임직원	前대표이사, 前담당임원
외부감사인	◆◆회계법인

2. 조치내용

○ ㈜OO

- 자본시장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감사인지정 3년
- 해임(면직)권고 상당(前대표이사, 前담당임원)
- 검찰고발(회사, 前대표이사, 前담당임원)
- 시정요구

○ 前대표이사 ☆☆☆
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16백만원

○ 前담당임원 ★★★
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◆◆회계법인

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%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2년

○ 공인회계사 ■■■
- 직무연수 4시간

○ 공인회계사 ▲▲▲
-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
- 직무연수 6시간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< ㈜OO >

○ **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**

-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으로서, 재화를 통제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

○ **지급보증 주석 미기재**

- 협력업체가 회사의 관계기업에 지급해야 할 채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급보증한 금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

○ **증권신고서 거짓기재**

- 회사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'21년반기부터 '22년1분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사용함

< ◆◆회계법인 >

○ **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소홀**

- 감사인은 철강 유통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나. 근거법규

○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등